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 회)	

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법 제26조의2 및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·분석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위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법 제26조의2에 따른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·분석 업무에 관한
위탁 규정 신설(안 제40조의2 제2항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합의 전

라. 기 타 : 1) 신·구 조문 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전

3) 규제심사 전

대통령령 제 호

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0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·분석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0조의2(과학기술통계와 지표 의 조사·분석) ① (생 략)	제40조의2(과학기술통계와 지표 의 조사·분석) ① (현행과 같 음)
<u><신 설></u>	<u>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</u> <u>제1항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</u> <u>통계와 지표의 조사·분석에 전</u> <u>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·</u> <u>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</u>
<u>②</u> ~ <u>④</u> (생 략)	<u>③</u> ~ <u>⑤</u> (현행 제2항부터 제4 항까지와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분석과	
연 락 처	(044) 202 - 6964